

함양군 · 창원힘찬병원 사회공헌사업 협약서

함양군과 창원힘찬병원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.

제1조 (목적) 본 협약은 함양군과 창원힘찬병원 간 『저소득계층 수술비 지원 사업』을 추진함에 있어 전반적인 지원과 상호 협력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협약기관)

- 함양군
- (의)상원의료재단 창원힘찬병원

제3조 (기본 원칙) 함양군과 창원힘찬병원은 상호 협력에 있어 당해 기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, 존중과 신뢰로써 본 협약의 이행에 최대한 협력한다.

제4조 (협약의 내용) 양 기관은 본 협약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약한다.

- 지원대상자는 군민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 소득 80% 이하의 저소득주민으로 한다.
- 지원범위는 질병진료에 필요한 진단 검사비, 수술비, 진료비 등 환자부담금 전액과 보호자 없는 병동 이용부담금 전액으로 한다.
- 진료과목은 정형외과와 신경외과의 수술적 치료로 한다.

제5조 (협의 조정) 본 협약서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양 기관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.

제6조 (비밀유지) 양 기관은 상호 교류를 통해 인지된 제반사항을 상대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며, 협약서의 효력이 종료된 이후에도 동일하다.

제7조 (효력) 본 협약서의 효력은 양 기관의 기관장이 서명한 날로 부터 발효되며, 합의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해지되지 않는 한 자동으로 매년 연장되어 유효한 것으로 한다.

제8조 (협약의 해지) 양 기관은 본 협약사항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 혹은 협약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. 이 경우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 또는 구두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9조 (법적 권리 · 의무) 본 협약서는 당사자들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도 가지지 않는다.

제10조 (기타) 본 협약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0년 6월 2일



함양군수 서.춘 수

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, appearing to read "서춘수".



병원장 이 상 훈

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, appearing to read "이상훈".